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281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2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2
나.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6

I. 개요

1. 이만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28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4.
- (3) 회 부 일 : 2025.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침체,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요

□ 현행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할 세액의 5~30%¹⁾를 감면하는 것임.

1992년 신설 당시에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감면업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음.

[지역별·업종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감면율]

구 분		지역 및 업종	감면율(%)
기업규모	소기업	도매업등(의료업 포함) 업종	10
		수도권 안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2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30
	중기업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 업종	5
		수도권 안의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10
		수도권 밖의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	15

동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1)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며, 성실사업자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비율에 110%를 곱한 비율을 적용

야 함.

중소기업 중 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의미하며²⁾,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동 제도의 조세지출규모는 2024년 기준 약 2조 3,636억원이며, 소득세 감면규모는 1조 3,130억원이고, 법인세 감면규모는 1조 506억원이었으며, 2025년과 2026년 조세지출 규모는 2조 3,379억원과 2조 4,127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음.

2) 소기업의 매출액 산정 규모는 세부업종에 따라 15억원~140억원으로 상이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소득세	법인세	합계
2011	4,924	6,029	10,953
2012	6,506	6,323	12,829
2013	6,384	6,256	12,640
2014	6,845	6,967	13,812
2015	9,011	7,079	16,090
2016	9,973	8,670	18,643
2017	10,492	10,111	20,603
2018	11,409	10,805	22,214
2019	10,885	9,535	20,420
2020	10,680	9,879	20,559
2021	9,995	9,534	19,528
2022	12,632	10,858	23,489
2023	13,738	11,598	25,336
2024	13,130	10,506	23,636
2025(전망)	12,975	10,404	23,379
2026(전망)	13,496	10,631	24,127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수혜현황을 보면, 활용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기업당 평균 수혜규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본 제도 활용기업 수는 법인과 개인 각각 15만개 및 76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각각 23만개와 116만명으로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기업당 수혜규모는 법인 500만원 내외, 개인은 100만원 초반 수준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도별 수혜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인수	150,687	159,784	172,771	189,384	202,191	209,112	218,488	210,282	226,671	231,807
감면액	696,669	759,247	867,029	1,011,138	1,080,514	953,514	987,883	953,354	1,085,758	1,159,784
법인당 수혜규모	4.62	4.75	5.02	5.34	5.34	4.56	4.52	4.53	4.79	5.00
개인 사업자수	765,496	827,485	869,869	925,458	955,667	978,291	949,301	1,054,908	1,087,528	1,096,239
감면액	901,040	997,228	1,049,203	1,140,906	1,088,412	1,067,950	999,473	1,263,184	1,373,832	1,313,035
개인당 수혜규모	1.18	1.21	1.21	1.23	1.14	1.09	1.05	1.20	1.26	1.20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p. 44

나. 적용기한 연장(문금주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정부안)

현행			개정안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 대상: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 ○ 유형별 공제율: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현행과 같음) ○ 유형별 공제율: (현행과 같음)	
본점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20	10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20	-	
지방	·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일반 서적 출판업 등 출판업	30	15	
	· 제조업 등 나머지 업종	30	15	
○ 감면 한도: 1억원 *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1인당 5백만원 감소 ○ 적용기한: 2025. 12. 31.			○ 감면 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8. 12. 31.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정부안) 2029. 12. 31. (문금주의원안) 2030. 12. 31.(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문금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년 1월 1일(정일영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정부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박용갑의원안)	

* 문금주의원안 2024. 12. 24. 발의(의안번호 6885), 정일영의원안 2025. 2. 10. 발의(의안번호 8025), 이만희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81), 윤준병의원안 2025. 3. 24. 발의(의안번호 9294), 박용갑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4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일영의원안, 박용갑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말까지 3년, 문금주의원안은 2029년 말까지 4년, 이만희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업체 수는 829만 8,915개로서,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911만 7,649 명으로서 전체 종사자 수 중 80.4%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구 분	2022년 (비중)	2023년 (비중)	증가(증감률)
기업체 수	8,042,726개 (99.9%)	8,298,915개 (99.9%)	256,189개(3.2%)
종사자 수	18,956,294명 (81.0%)	19,117,649명(80.4%)	161,355명(0.9%)
매출액	33,090,291억원 (44.2%)	33,012,545억원 (44.9%)	-77,746억원 (-0.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2025. 8.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산업생태계의 중추를 구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폐업자수는 2023년 91.1만명으로 2021년 81.9만명 대비 9.2만명 증가하였고,³⁾ 법인 파산 신청건수는 2024

3)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 1.

년 1,940개사로 2021년 955개사 대비 약 1,000개사가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중소기업의 재무성과와 고용의 양과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증분석 결과 본 제도가 법인사업자의 재무성과, 투자, 노동생산성 및 고용의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음.⁴⁾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동 제도 수혜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평균 급여액에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⁵⁾

둘째, 본 제도로 인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가 확대되는 등 수평적 형평성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 적용 후 수혜기

4)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5. 9.

5)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

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9%p 인하되었고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실효세율 격차는 2.1%p까지 확대되었음.

또한,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동 제도는 수혜 대상 업종을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사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여부가 상이하여 수평적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⁶⁾.

셋째, 본 제도는 1992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운영 중인 조세감면 제도로서 기업이 이를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곧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본 제도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분석 결과 일몰 연장 필요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는 조세지원 제도로서 적용 종료 시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22. 9.